

기업윤리 브리프스 *Business Ethics Briefs*

1.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

【 제정 경위 】

□ 『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(*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*)』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99년 2월에 초안이 발표된 후 동년 5월에 OECD 각료회의에서 통과

○ 동 원칙은 1) 주주의 권리, 2) 주주의 동등 대우, 3)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역할, 4) 공시 및 투명성, 5) 이사회 임무와 책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

○ 국제금융안정포럼*(*Financial Stability Forum*)은 동 원칙을 12개 금융시스템 건전성 기준 중 하나로 지정

* 주요 선진국 감독 당국, 국제 감독기구 등 41개 기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,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논의

□ 이후 엔론社 등의 대형 회계부정 사건과 기업지배구조 환경 변화를 계기로 2002년부터 기존의 원칙을 수정, 보완하여 2004년 5월 OECD 각료회의에서 개정 원칙을 통과시킴

○ 개정 원칙에서 기업지배구조 제도 확립, 주주의 권리와 이사회 독립성 및 책임이 강화되었으며,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관한 세부 사항도 추가되었음

- o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일종의 지침으로서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나

각국의 실정에 맞는 기업지배구조 기준을 제정하고 자국 시장의 건전 발전을 유도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음

【 원칙 내용 】

I.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반 확립 (*Ensuring the Basis for an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Framework*)

기업지배구조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고, 관련 법규에 부합하여야 하며, 독립된 감독, 규제 및 집행 당국간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

- A. 기업지배구조는 전체 경제의 성과, 시장의 무결성 (*integrity*), 시장참여자 유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체제로 개발되어야 함
- B. 기업지배구조의 관행에 대한 규제조치는 관할지역을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여야 하고, 투명해야 하며, 집행 가능해야 함
- C. 관련 당국간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, 공공 이익이 확보되어야 함
- D. 감독, 규제 및 집행 당국들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, 도덕성 및 인적 자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특히 이들 당국의 업무수행은 시의적절하고, 투명해야 하며 충분히 납득 가능해야 함

II. 주주의 권리 및 핵심 소유자의 기능 (*The Rights of Shareholders and Key Ownership Functions*)

기업지배구조는 주주권을 보호하고 행사를 용이하게 하여야 함

- A. 주주의 기본 권리에는 1) 소유권 등기 방법의 결정, 2) 주권의 양도 또는 이전, 3) 기업의 중요한 관련 정보의 수시 및 정례적 획득, 4)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, 5) 이사 선출 및 해임, 6) 이익분배권 등이 포함되어야 함
- B. 주주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, 1) 정관 또는 기타 중요 규정의 변경, 2) 증자 승인, 3) 중요자산 매각 등 특별거래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,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함
- C. 주주는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투표절차 등 주주총회 관련 제반 규칙에 관하여 통보받아야 함
1. 주주는 주주총회 일자, 장소, 의제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고도 시의적절하게 제공받아야 함
 2.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상대로 연례 외부감사 관련 질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, 주총 안건사항을 설정하고 일정범위 내에서는 해결책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
 3. 주주는 이사의 지명 또는 선출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, 이사 및 임원의 보수지급 방침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, 지분구성 비중에 따라 이사 및 종업원의 보상체계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
 4. 주주는 본인 외에 대리인을 통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효과는 동일해야 함
- D. 특정 주주가 자신의 지분과 달리 과도한 지배권을 갖게 할 수 있는 자본구조나 조치는 공시되어야 함
- E. 기업지배권과 관련된 시장의 기능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

1.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지배권 취득, 합병 등 특별거래, 회사 중요자산의 매각에 관한 규칙과 절차 등은 투자자들이 스스로의 권리 및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되고 공시되어야 함
2. 적대적 M&A 방어수단은 경영진 및 이사회에 책임은폐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됨

F. 기관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

1. 수탁자 기능을 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전반적인 기업지배구조와 투자 관련 의결권 행사 방침 및 절차 등을 공시하여야 함
2. 수탁자 기능을 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 관련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상충 발생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여야 함

G. 주주 및 기관투자자는 이 원칙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주주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(권리남용에 관한 예외적 사항은 제외)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어야 함

III. 주주의 동등 대우 (*The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*)

기업지배구조는 소액주주 및 외국인주주 등 모든 주주의 동등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, 모든 주주에게 권리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

A. 동종의 주식을 가진 모든 주주는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함

1. 동종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, 모든 투자자들은 주식 매입시 동 주식에 부여된 권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야 함. 의결권을 변경하는 경우 이로 인해 손해 볼 수 있는 종류의 주식보유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야 함

2. 소액주주는 지배주주의 직·간접적인 권한남용 또는 이익추구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
3. 주식 보관기관 및 명의인(은행 및 예탁기관 등)의 의결권 행사는 실질주주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이루어져야 함
4. 외국인주주의 국경간 투표(*cross-border voting*)를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되어야 함
5. 주주총회의 과정 및 절차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어렵게 하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됨

B. 내부자거래* (*insider trading*) 및 자기거래** (*self-dealing*)의 남용은 금지되어야 함

* 대주주나 임직원이 그 직무 또는 직위 덕택에 얻는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

**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회사와 하는 사적 거래

C. 이사 및 임원이 특정 거래 또는 사안에 대하여 직·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제3자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

IV.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 역할 (*The Role of Stak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*)

기업지배구조는 법령에 의하거나 상호협약으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해야 하며, 기업과 이해관계자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기업의 富 및 일자리 창출과 재무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

- A. 기업지배구조는 법령에 의하거나 상호협약으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해야 함
- B.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법에 보장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
- C. 기업지배구조는 종업원의 참여를 통한 성과 제고 체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함
- D. 이해관계자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에게 신뢰성 있는 관련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함
- E. 종업원 개인 및 대표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탈법적 또는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, 그들의 권리가 의견개진을 위한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
- F. 기업지배구조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파산제도와 효과적인 채권자 권한 행사 제도 등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함

V. 공시 및 투명성 (*Disclosure and Transparency*)

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재무상태, 영업성과, 소유 및 지배권 등에 관한 모든 중요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

- A. 공시되어야 할 중요 정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
 - 1. 기업의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
 - 2. 기업의 목표
 - 3. 주요 주주 및 선임권
 - 4. 이사 및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침, 이사의 자격, 선임 등과 관련한 정보, 그리고 경영진 구성 및 이사회와의 독립 여부
 - 5. 특수관계인과의 거래(내부자 거래 등)

- 6. 예상되는 위험요인
 - 7.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
 - 8. 기업지배 관련 체제, 방침(강령 등 포함) 및 동 이행 과정 등
- B. 정보의 준비 및 공시는 질적 수준이 높은 회계 및 재무·비재무 공시기준에 부합되어야 함
- C. 이사회 및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수 있도록 연례감사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독립된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
- D. 외부감사인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고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수행시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함
- E. 정보 전달 경로는 관련 정보이용자가 동등한 자격으로, 시의적절하게, 비용 효율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
- F. 기업지배구조 구축시 분석전문가, 금융중개인, 평가기관 등의 기업 분석 또는 자문 업무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면서도 중대한 이해상충 없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도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함

VI. 이사회 책임 (*Th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*)

기업지배구조에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및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이사회,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책임사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

- A.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기업과 주주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
- B. 이사회 의사결정이 주주 집단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사회는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
- C. 이사회는 기업에 대하여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

D. 이사회는 다음 중요 기능을 수행해야 함

1. 기업의 전략, 주요 실행계획, 리스크관리 방침, 연례 예산 및 사업계획의 검토 및 지도, 이행목표의 설정, 업무집행 및 성과의 감독, 주요한 자본적 지출, 자산취득 및 투자회수 등에 대한 감시
2.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관행에 대한 감시 및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유도
3. 주요 임원의 선임, 보상, 감시와 필요시 임원 교체 및 승계 계획의 감독
4. 기업 및 주주의 장기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임원 및 이사의 보수 책정
5. 이사 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식성 및 투명성 확보
6. 기업자산의 오용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남용 등을 포함한 경영진, 이사회 및 주주간의 잠재적 이해상충 요인 파악 및 조정
7. 독립된 감사인을 포함한 회계 및 재무보고시스템의 무결성(integrity) 확보와 리스크관리, 재무 및 운영 관리, 준법관리 등을 위한 적절한 통제 시스템 확보
8. 정보공시 및 전달 과정 감독

E. 이사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함

1.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책무(재무 및 비재무적 보고의 무결성 확보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심사, 이사 및 주요 경영진의 선임, 이사의 보수결정 등) 수행시 독립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비상임이사(*non-executive board members*)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
2.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의 임무, 구성내역, 업무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여 공시해야 함
3. 이사들이 소관 책무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F. 이사들이 소관 책무를 완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한 관련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

2.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OECD 지침

【 제정 경위 】

- 2002. 6월 OECD 기업지배구조 조정위원회(*Steering Group on Corporate Governance*)는 산하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작업단(*OECD Working Group on Privatisation and Governance of SOEs*)에 회원국들의 공기업 지배구조 모범사례(*Best Practice*)를 조사·분석하여 『공기업 지배구조 지침(*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-Owned Enterprises, 2005*)』을 제정할 것을 지시
- 이후 수차례에 걸친 회의 및 OECD Website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2005. 4월 OECD 이사회(*Council Meeting*)는 공기업 지배구조 지침을 공식 의결하고 이를 대외 공표

【 서 문 】

-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에너지·운송·통신·금융·SOC 등의 핵심분야에서 거대한 공기업들을 설립·운영중임
 -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성과는 일반국민, 여타 산업분야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,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침
 - 따라서, 공기업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
- 공기업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민간부문의 지배구조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음
 - 경영진, 이사회, 소유권행사기관, 주무부처, 정치인 등 많은 의사결정 관련자가 존재함에 따라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

-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은 파산·인수합병 등의 위험이 거의 없는 상황
- 경영에 대한 정부의 일상적 간섭문제는 그간 쟁점이 되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으나, 소유권의 주체로서의 임원임면·경영평가·경영공시·이사회 등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개선문제는 쟁점화가 다소 미흡

【 지침 내용 】

I. 공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법령 및 규제체계 확립(*Ensuring an Effective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for State-Owned Enterprises*)

공기업에 대한 법령·규제체계는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공정 경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기본체계는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부합하여야 함

- A. 소유권행사기능(*ownership function*)과 시장규제와 관련된 공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역할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함
- B. 정부는 공기업의 경영활동을 규제하는 관행 및 법령 등을 간소화하고 합리화시켜야 하며, 법적으로 채권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파산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C.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의무나 책임은 법령이나 규정에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그러한 의무나 책임은 일반에 공시되어야 하는 한편, 관련 비용은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함
- D. 공기업에 대하여 법령 및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며 경쟁자등 이해관계자들이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공평하게 대우받아야 함
- E. 법령 및 규제체계는 공기업이 기업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본구조변경에 대한 충분한 유연성을 허용

- F. 공기업은 금융취급시 민간기업과 동일한 경쟁상태에 놓여져야 하며, 국책은행, 공공 금융기관 및 여타 공기업 등과의 관계는 순수하게 상업적인 기준에 따라야 함

II. 소유권 행사자로서의 정부 (*The State Acting as an Owner*)

정부는 전문지식과 적극성을 갖춘 소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, 공기업의 지배가 전문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감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명확하고 일관된 소유권정책을 확립하여야 함

- A. 정부는 공기업 소유의 목적, 공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및 소유권 관련 정책의 수행방법 등을 명시한 소유권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여야 함
- B. 정부는 공기업의 일상 경영(*day-to-day management*)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며, 공기업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
- C. 정부는 공기업 이사회가 그들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들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함
- D. 소유권 기능은 정부 부처간에 명확히 인식되어야 하며, 소유권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 조정기관(*Co-ordinating Entity*)의 설립 또는 소유권 기능의 집중화(*centralization*)가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음
- E. 소유권 조정 또는 보유기관은 국회에 대해 보고책임이 있으며, 최고 감사기관 등 여타 정부기관과의 관계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
- F. 소유권 행사자로서의 정부는 공기업별 법률적 구조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해야 하는바, 이에 대한 주요 책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음
1.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정부지분의 주주권 행사
 2. 체계적이고 투명한 이사 임명절차를 확립하고 공기업 이사회 지명에 적극적으로 참여

3.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위한 보고제도 구축
4. 법적 제도 및 정부의 소유권 범위내에서 허용되는 경우 외부회계감사 및 정부감사기관과 상시 협의
5. 공기업 이사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공기업의 장기 이익을 증진

III. 주주의 동등 대우(*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*)

정부와 공기업은 모든 주주들의 권리를 인식해야 하며, 「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」에 따라 주주의 동등한 대우 및 기업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함

- A. 공기업 소유권 조정 또는 보유기관과 공기업은 모든 주주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함
- B. 공기업은 모든 주주들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함
- C. 공기업은 모든 주주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및 자문 정책을 개발해야 함
- D. 소액주주가 이사 임명 등 공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이 용이해야 함

IV.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(*Relations with Stakeholders*)

정부의 소유권정책은 공기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, 공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해 보고토록 요구해야 함

- A. 정부, 소유권 조정 또는 보유기관 및 공기업은 법령 또는 상호협약에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하며, 이에 관해서는 「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」이 준용되어야 함

- B. 상장되었거나 대규모 공기업, 순수한 공공정책 목적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도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보고하도록 할 필요
- C. 공기업 이사회는 내부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, 시행, 확산하여야 하며, 동 윤리강령은 국내 규범을 기반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자회사에도 적용되어야 함

V. 투명성 및 공시 (*Transparency and Disclosure*)

공기업은 「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」에 따라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함

- A. 소유권 조정 또는 보유기관은 공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공기업 전체를 포괄하는 연차보고서를 발간해야 함
- B. 공기업은 효율적인 내부감사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사회, 감사위원회 또는 동등한 기구 등에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내부감사 기능을 확립해야 함
- C. 대규모 공기업은 매년 국제기준에 따른 독립된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대상이 되어야 하며 내부감사 절차가 있다 하더라도 독립적인 외부감사를 대체하지는 못함
- D. 공기업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높은 수준의 회계 및 감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, 대형 또는 상장 공기업은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 공시해야 함
- E. 공기업은 「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」에 규정된 주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되 주주인 정부와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항에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하는데, 이러한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음
 - 1. 공기업의 목표 및 성과 관련 구체적 보고서
 - 2. 공기업의 소유 및 의결권 구조

3. 중요한 위험 요인 및 위험 관리시 취해진 조치
4. 국가의 금융지원 및 지급 보증 등 재정지원 내역
5. 관계 기관과의 중요한 거래내역

VI. 공기업 이사회의 책임 (*The Responsibilities of the Boards of State-Owned Enterprises*)

공기업 이사회는 경영에 대한 전략적 자문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·전문성·객관성을 갖춰야 하고,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, 이사회 활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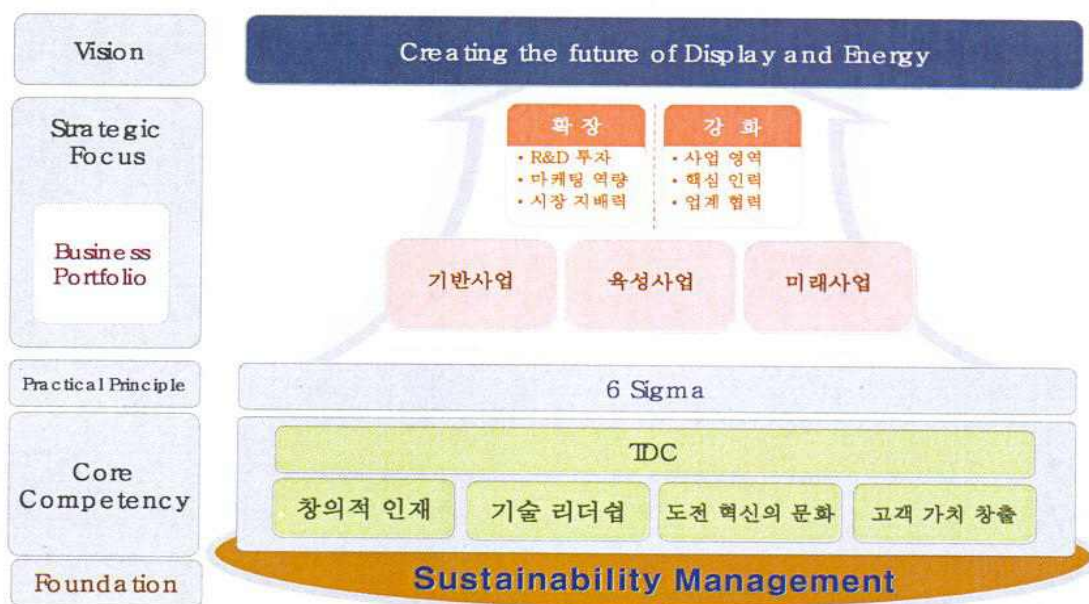
- A. 공기업 이사회는 명확하게 임무(*mandate*)가 주어져야 하며, 경영성과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회사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, 모든 주주를 동등하게 대하여야 함
- B. 공기업 이사회는 정부와 소유권 조정 또는 보유기관에 의하여 설정된 목표에 의거 경영감시 및 전략적 자문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, CEO 선임 및 해임 권한도 보유해야 함
- C. 공기업 이사회는 의사결정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, 이사회 의장이 CEO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관행으로 평가됨
- D. 종업원대표의 이사회 참여가 의무적인 경우에 대표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기능, 정보 및 독립성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E. 필요할 경우 이사회는 전체이사회 기능을 보완하는 전문화된 분과별 특별위원회(*specialized committees*)를 설치할 필요(특히 감사위원회,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상위원회 등)
- F. 공기업 이사회는 그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수행해야 함

3.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추진 사례

□ 삼성 SDI의 윤리경영 추진실적*

* 2006. 03. 16일 삼성 SDI가 국가청렴위원회에 송부한 자료를 요약한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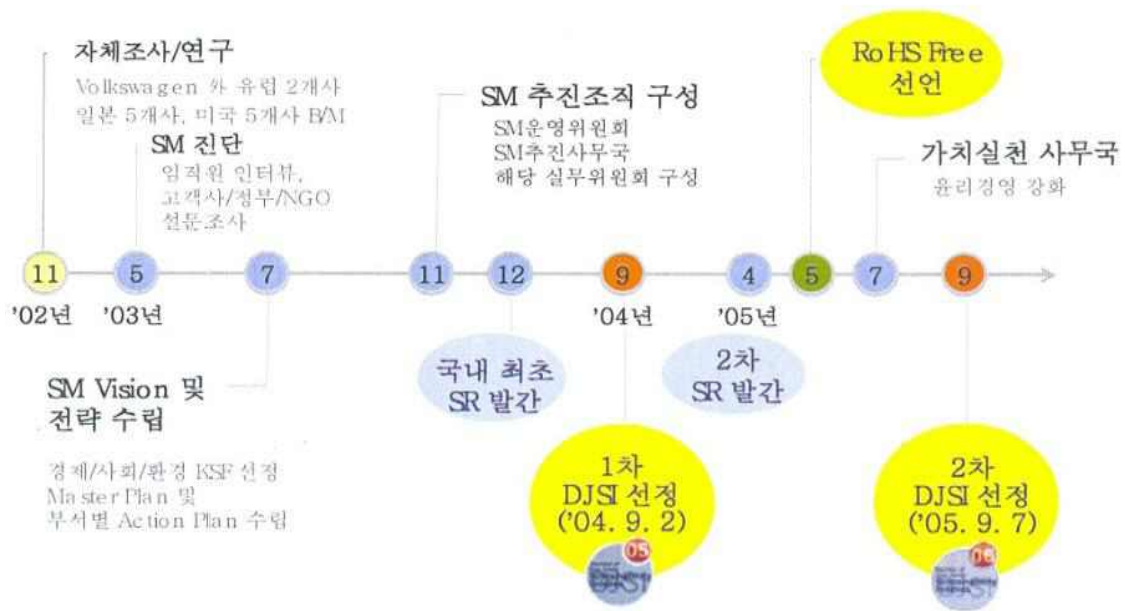
【 전사 VISION 체계도 】



【 지속가능경영 VISION 및 전략 】



【 추진 경과 】



【 주요 활동 】

◎ 경제부문

- 성장 및 혁신을 위해 육성사업 일류화, 미래사업 가속화 및 신사업 Incubation, 기반사업 수익률 유지, Global 거점 최적화 등 4대 중점과제 추진
-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, 회계상 위험요소를 사전 통제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
- 경영철학으로서 '96년 국내 최초로 “6시그마”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경영 혁신 추구(경영 = 혁신 = 6시그마 개념)
 - 6시그마적 문화 정착(일하는 방식, 사고하는 방식), 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선, 재무적 성과 및 인력 육성 등의 성과

◎ 환경부문

-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환경규제 대응체제 확립
 - o RoHS Free 선언('05.5월) : 전 제품에 대해 기술 개발 및 적용 완료
 - o 全 협력회사 Lead-free 솔더링 기술 확보 ('05.3월)하고, RoHS Free Label 부착 ('05.9월)
- Win-Win Partnership 구축하여 협력사 지원(녹색구매)
 - o 재무, 환경, 사회 부문을 평가하여 S-Partner로 인증('05년 말까지 138 개사)하고, '07년 이후 S-Partner 未인증 회사에 대해서는 거래중지
 - o 산자부 "청정생산 기술이전 확산사업"과 연계하여 협력회사 환경경영 개선 지원활동

◎ 사회부문

- 윤리경영 추진강화를 통한 체질화
 - o 윤리경영의 핵심가치를 그룹 경영원칙과 연계하고, Global Standard에 입각한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
 - o 『사이버 감사』 시스템 구축 및 『가치사무국』 운영
-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기업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
 - o 무료 개안수술(95.5월 시작) : 2,560명 개안수술, 104,636명 진료
 - o 매칭 그랜트 '사랑의 빛 펀드' : 7600명 18,000구좌 개설
 - o 도우미견 사업 : 청각 도우미견 분양
 - o 임직원 봉사활동 : 140개 봉사팀 활동, 매년 90% 이상 임직원 참여

◎ 인프라 구축

- SMIS 시스템을 구축('04.8월~'06. 2월)하여 친환경 제품 개발 지원, SM과제, SM 성과 관리 및 SR(지속가능성 보고서) Database화 등 추진
- 내부 Process 개선을 통해 개발~품질/영업까지 전 Process 표준·규정을 정립하고 개발/구매 등 기존 규정에 통합

◎ 지속가능보고서 발행

- 경영비전 및 지속가능경영 성과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, 신뢰 구축, 기업 가치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보고서 발행
 - o GRI Guideline에 근거하여 경영비전, 전략 및 경제,환경,사회부문의 142개 지표에 의거 경영성과 공개
 - o '04.12월 국내 최초 지속가능성 보고서(Sustainability Report) 발행
 - o '05.5월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Annual Report 합본 발행

【 지속가능경영 성과 】

- ◎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(DJSI :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) 2년 연속 선정
 - 국내 최초로 '04년, '05년 DJSI 선정되었고, '05년 Electronic Equipment Sector Leader로 선정
 - o 전세계 상장회사 中 지속가능성 수준 Top 10% 기업이 편입되는 DJSI에 선정됨으로써 Global 초일류기업 대열에 포함되고, SRI Fund 투자 대상 기업으로 인정받음
 - '05년 Innovest 평가 AAA 획득

4. 국내 윤리경영 소식

【 기업 관련 】

◎ 도로공사, 공기업 최초로 '청렴 사직 서약제' 도입 ('06.3.2)

- '청렴 사직 서약제'는 계약 담당이나 관리감독원, 감사원 등 각종 계약 관련 보직에 임명시, 사장에게 '청렴 사직 서약서'를 제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사직하겠다는 것임

◎ KTF, '신념카드'제도와 '벨'(BEL, Business Ethics Leader) 브랜드 도입 ('06.3.6)

- 직원들이 대외 행동을 할 때 윤리경영에 입각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요령을 명기한 '신념카드'를 사원증과 함께 패용
- '벨'(BEL)이라는 브랜드를 도입해 윤리경영이념을 협력업체 및 지역 사회까지 확대 적용

◎ 경남 건설업체, 윤리경영 선언('06.3.14)

-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소속 경남지역 일반건설업체 대표들이 성실 시공과 투명 경영 등을 약속하는 윤리경영 실천 선언문을 발표
- 성실·완벽 시공, 부조리 척결, 투명한 기업경영 원칙 확립, 환경친화적 건설문화 정착,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 등을 결의

◎ 2006 윤경포럼* 세미나 - 'CEO 윤리경영 서약식' 개최('06.3.15)

- * '윤경포럼'(공동위원장: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, 조동성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)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2003년 2월에 발족하였으며 윤리가 경쟁력임을 믿는 이들의 다자간 포럼임

-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고경영자 및 사회지도자 53명이 참여하여 ‘최고경영자와 1대 주주가 기업문화 혁신을 선도하고, 적극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가는 동시에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’는 서약식을 개최

◎ KT&G, ‘함께하는 기업이 되자’는 경영 이념하에 지역 단위의 복지 활동
(‘06.3.21)

- KT&G는 기부위주의 복지사업이 아닌 불우이웃을 직접 돕는 방식으로 구로, 강북, 마포, 중랑 지역 등 4곳에 복지센터를 개설하고 식생활 지원, 주거개선 서비스와 난방지원, 긴급구호사업, 김장나누기 등을 실시

【 정부 관련 】

◎ 산업자원부, ‘2005년도 주요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’ 결과 발표
(‘06.3.10)

- 공기업의 윤리경영 실태는 10점 만점에 평균 7.86점을 기록해 전년도보다 14.7% 개선되었고 민간기업은 평균 6.65점으로 2004년 보다 8.0% 상승
 -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국동서발전, 민간기업 중에는 현대오일뱅크(제조업), 우리은행(금융·서비스), 신세계(도·소매업), 포스코건설(건설업) 등이 각 분야별 최우수 윤리경영기업으로 평가

◎ 기획예산처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통보(‘06.3.12)

(경영혁신 기본방향)

- 국민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·반부패 경영 정착
 - 인사관리, 보수관리, 예산운용 등 고질적인 취약분야를 공통 혁신과제로 지속 추진

- 공공기관의 현황 및 경영성과 등 핵심정보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신속·정확하게 공개

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경영혁신 성과 창출

- 시스템·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,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혁신 브랜드 창출

— 혁신문화 내재화로 지속적·상시적 경영혁신 추진

-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 경쟁 및 공정한 평가·보상체계를 구축하여 혁신의 내재화, 시스템에 의한 혁신 추진

(주요 신규 도입제도)

	현 행	개 선
직무청렴 계약제도	○ 직무상 불법 행위시, 형사상 책임 및 면직처리 * 공공기관이 해당 임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사실상 없음	○ 형사상 처벌 및 면직처리 ○ 비리로 인한 형사처벌시, 직무청렴 계약 이후 지급한 성과급을 소급하여 환수
비용추계 공시제도	○ 단체협약, 각종 보증 등 장래에 경영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미공개 ○ 국민들은 문제가 터진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 알게 되는 상황	○ 공공기관의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계약·협약체결의 내용, 추정 소요금액, 재원확보방안 등을 공개 ○ 국민들의 경영감독권이 강화되고 경영진으로 하여금 신중한 의사결정 유도
감사인력 교류제도	○ 감사인력은 대부분 내부에서 충원 → 문제 적발시에도 엄정한 처리에 한계	○ 감사의 요청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를 파견받아 감사팀 구성 가능 ○ 내부 감사의 엄정성, 투명성 확충
클린 카드제	○ 업무추진비를 일반 카드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 발생	○ 카드 사용범위를 사전에 제한하여 사용 ○ 클린카드 발급을 통해 유흥업소 등 부적정한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
혁신과제 실명제	○ 경영평가, 혁신평가 결과는 기관의 실적으로만 관리 ○ 공기업 임원인사시 객관적으로 축적된 자료확보에 한계	○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 지표별 평가결과를 담당자(실무자-간부-임원)별로 유지·관리 ○ 공공기관 임원 인사시 객관적인 성과에 근거하여 인사